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 월 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서식 등 하위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주승인을 입주계약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사항 반영(안 제9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입주승인을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서식을 정비함.”

나. 양도승인을 양도신고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사항 반영(안 제10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양도승인을 관리기관의 양도신고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서식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입주 승인신청서 등)”을 “(입주 계약신청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주승인을 받으려”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로, “입주승인신청서”를 “입주계약신청서”로, “진흥재단”을 “관리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입주승인”을 “입주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주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주 변경 승인신청서”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주계약변경신청서”로, “진흥재단”을 “관리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부지 등 양도승인신청서)”를 “(부지 등 양도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승인을 받으려”를 “양도신고를 하려”로, “양도승인신청서”를 “양도신고서”로, “진흥재단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관리기관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승인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양도신고를 받은 관리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입주 []계약
[]계약변경 신청(확인)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 소재지			
신청내역	입주 목적			
	연구분야(사업분야)			
	입주(예정)주소			
	부지면적		시설면적	
	조성지(㎡)	원형지(㎡)	총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	
	(/100)		(/100)	
	시험공장 설치계획	업종명(산업분류코드)	시험공장 설치규모	생산제품
			생산설비	부대설비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주계약(변경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주계약을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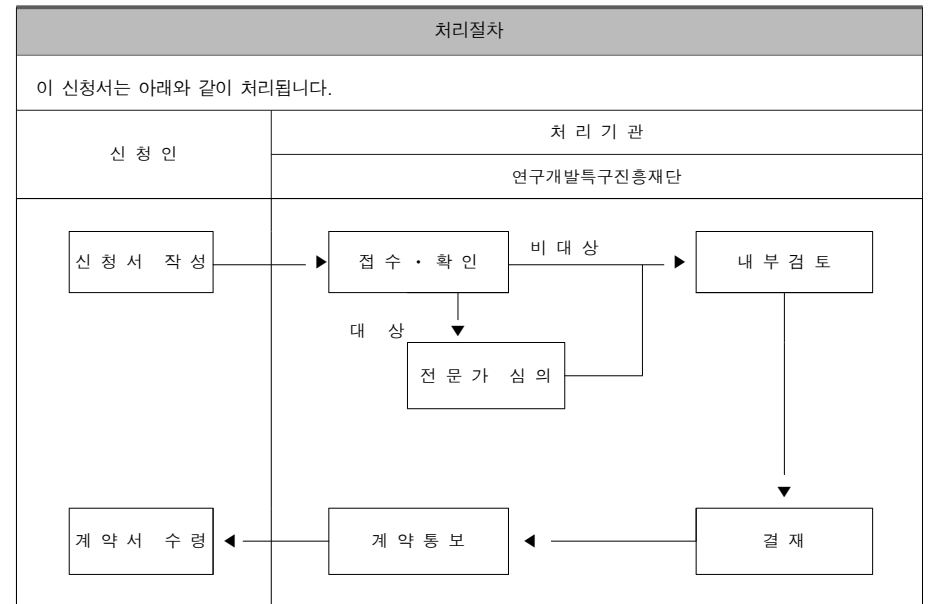
년 월 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직인

(뒤 쪽)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입주계약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 부지
[] 시설
[] 건축물

양도신고(확인)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알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양도인	성 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 소재지			
양수인	성 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 소재지			
양도내용	양도(예정)지 주소		
	부지면적		시설면적
	조성지(㎡)	원형지(㎡)	총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처분가액(백만원)		건물감정 평가액(백만원)
	건폐율	용적률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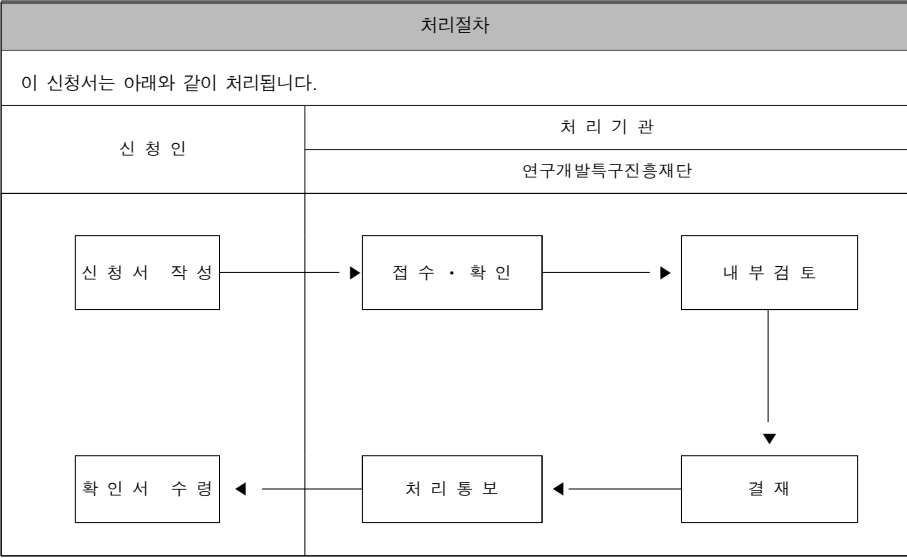
양도사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고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시설을 양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첨부서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양도사유서 1부.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의 산출 근거에 관한 서류 1부 3. 양도사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관리기관 확인사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연구소기업 등록 절차 등) ① ~ ③ (생략) ⑤ (생략)	제4조(연구소기업 등록 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제9조(입주 승인신청서 등) ① 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 영 제33조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으 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주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u>진흥재단</u> 에 제 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영 제32조에 따른 <u>입주승인</u>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 류 1부 ② 법 제37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u>입주변경</u> <u>승인</u> 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 3호서식의 <u>입주 변경 승인신청</u> <u>서</u>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u>진흥재단</u> 에 제출하여야 한 다. 1. ~ 3. (생략) ③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u> 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입주승	제9조(입주 계약신청서 등) ① -- ----- ----- <u>입주계약을 체결</u> <u>하러</u> ----- <u>입주계약신청서</u> ----- ----- <u>관리기관</u> ----- -----. 1. 2. (현행과 같음) 3. ----- <u>입주계약</u> ----- ----- ② ----- ----- <u>입주변경계</u> <u>약을 체결하러</u> 는 자는 별지 제1 <u>2호서식의 입주계약변경신청서</u> ----- --- <u>관리기관</u> -----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 호서식의 <u>입주 (변경)승인서</u> 를 <u>진흥재단</u> 을 거쳐 신청인에게 발 급하여야 한다. <u>입주 변경승인</u> <u>을</u> 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부지 등 양도승인신청서) ① 법 제38조제1항 및 영 제34 조제1항에 따라 부지·시설 또 는 건축물의 <u>양도승인</u> 을 받으려 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부 지·시설·건축물 <u>양도승인신</u> <u>청서</u>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u>진흥재단</u> 을 거쳐 <u>과학기술</u> <u>정보통신부장관</u> 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부지·시설· 건축물 <u>양도승인신청</u> 을 받은 과 <u>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u> 은 「전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 여야 한다. 1. 2. (생략)	제10조(부지 등 양도신고서) ① - ----- ----- ----- <u>양도신고</u> 를 하러--- ----- ----- <u>양도신고서</u> --- ----- ---- <u>관리기관</u> 에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u>양도신고</u> 를 받은 <u>관리기</u> <u>관</u> ----- ----- ----- -----. 1. 2. (현행과 같음)